

#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689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# 1. 개정이유

고성군보건소의 신축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○ 보건소의 위치변경(안 별표 1)

○ 고성읍 성내리 72-42 → 고성읍 대독리 4

### 3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고성군보건소의 위치란중 “고성읍 성내리 72-42” 를 “고성읍 대독리 4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